

한일 세미나

# 한국 치매신탁시장과 보험회사의 역할

류 건 식 (RMI 보험경영연구소 연구위원)

2025.6.26.

# 목 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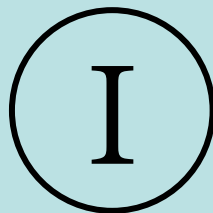
---

I. 초고령사회, 치매신탁의 중요성 증대

II. 치매신탁 시장 현황 및 평가

III. 보험회사의 역할과 과제

IV. 맺음말



# 초고령사회, 치매신탕의 중요성 증대

---

1. 치매환자수 급증
2. 치매의 사회적 비용 증대
3. 치매고령자의 치매머니 규모 증대
4. 치매신탕상품의 니즈 확대
5. 치매신탕활성화 정책의 추진
6. 치매신탕시장의 성장가능성 증대



자료: Chat GPT 이미지, '치매가족'

# 치매 (Dementia) 는 무엇 ?

## 정의

- 라틴어로 “ **정신이 없어 진다** “ 라는 뜻
- 치매는 뇌손상으로 인지기능을 상실하는 “ 뇌질환”을 의미 ( 인지기능 장애)

## 명칭

- 치매 ( Dementia / **癡呆, 어리석을 癡, 어리석을 呆** )
- 모멸감 명칭 변경 : 일본(2004년)은 인지증(認知症), 대만은 실지증(失知症)

## 유형

- 알츠하이머 치매, 혈관성 치매, 알코올성 치매, 파킨슨병 치매, 루이소체 치매 등 20여개이상
- 알츠하이머 치매 : 전체 치매의 60-70%, 뇌졸중 등 혈관손상에 의한 치매 : 15-20% 차지

## 영향

- 치매는 환자개인, 가족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또는 국가문제로 확대
- 치매는 장수(長壽)의 ‘**적(敵)**’
- “ 노인층이 **암보다** 가장 무섭고 두려워 하는 **노인질환 1위** “ ( 치매 43% > 암33%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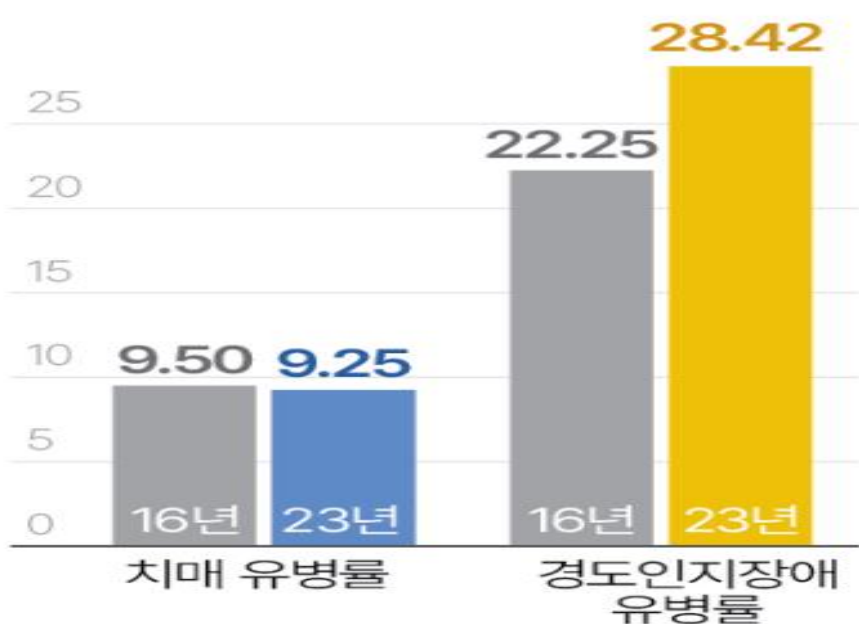
# 1. 치매 환자수 급증 : 치매 400 만명 시대 (경도인지 298만명 + 치매환자 97만명=치매고령자 395만명)

· 2023년 기준,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9.25%, 경도인지 장애율은 28.42%

- 추정 치매환자 : 2025년 97만명, 2030년 121(만명), 경도인지장애자 추정 : 2025년 약 298만명, 2040년 약 513만명

\* 치매단계 : 건망증 → 치매전(前)단계(경도인지 장애) → 치매 단계 (최경도치매 → 경도치매 → 중등도치매 → 중증치매)

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유병률 (단위 : %)



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추정(단위: 만명)



자료: 보건복지부, 치매역학조사 결과 (2025)

## 2. 치매의 사회적 비용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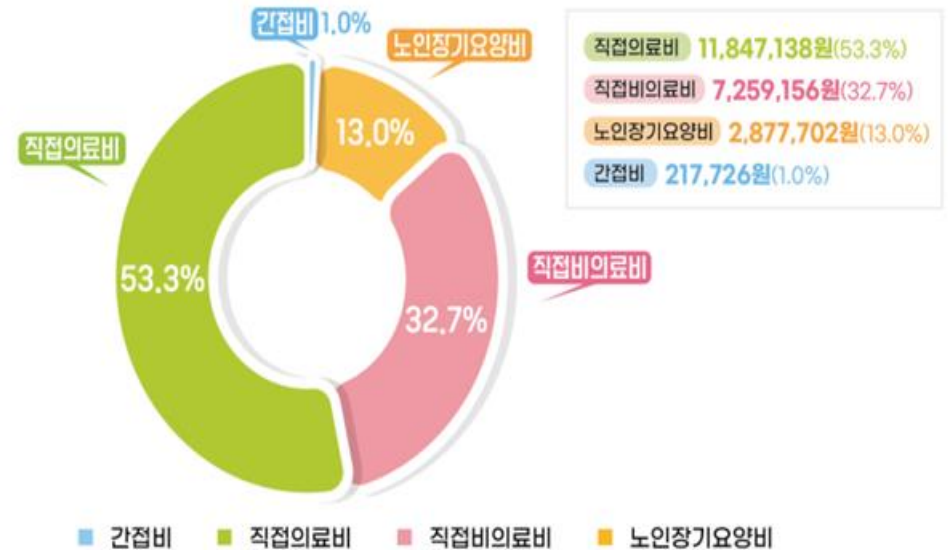
- 치매 환자 연간 총 국가 치매관리비용은 **약 20조 8천억원 수준 : GDP의 0.96%**
  - 치매환자 **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은 2,220만원** : 연간 가구소득의 38.3%
  - 치매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 구성비 : 직접의료비 > 직접비의료비 > 노인장기요양비 순

치매환자 연 총 국가관리 비용 현황

구분	2022년 기준
치매환자 1인당 관리비용(만원)	<b>2,220(만원)</b>
65세이상 추정치매 환자수(명)	935,086.6
치매환자 총 관리비용	<b>20.8(조원)</b>
국가총생산(명목 GDP)(조원)	2,162
GDP 대비 치매환자 총 관리비용 비율(%)	0.96

자료: 2023년 대한민국 치매현황

치매환자 1인당 연간관리비용 구성비(%)



### 3. 치매 고령자의 '치매머니' 규모 확대

- 2023년 기준, 치매머니(치매환자 보유자산) 규모는 **154조원 수준 : GDP의 6.4%**
- 치매머니 추정액 : **2030년 220조원(GDP의 8.2%)** → 2050년 488조원(GDP의 15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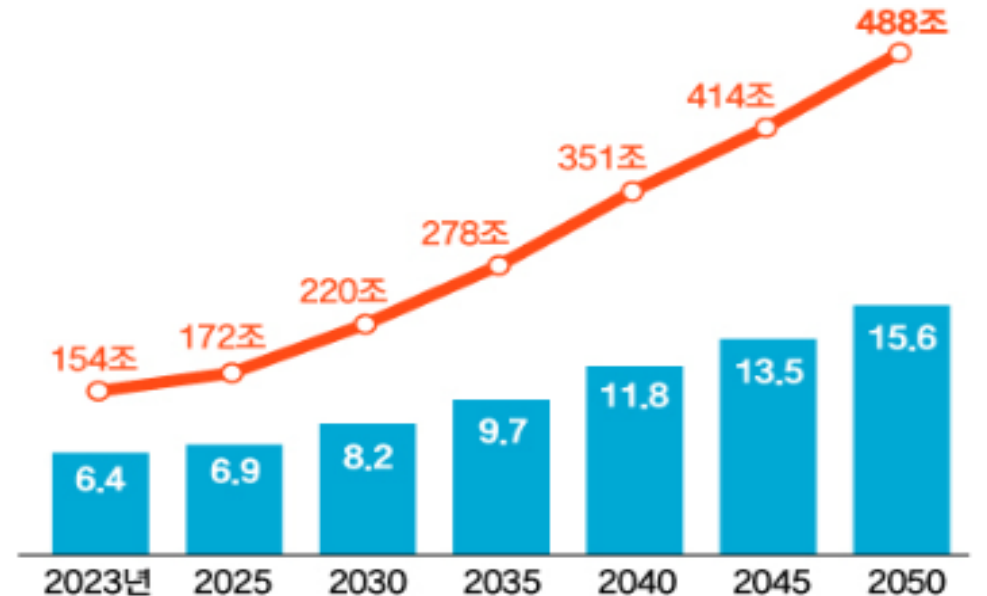
치매환자의 치매머니 규모 (2023년 기준)

단위: 원 ● 전체 치매환자 ● 중증 치매환자  
 ※전체 치매 환자 124만명 조사결과



연도별 치매머니 규모 추정액(단위: 조원)

※치매머니=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● GDP대비(%) ● 치매머니(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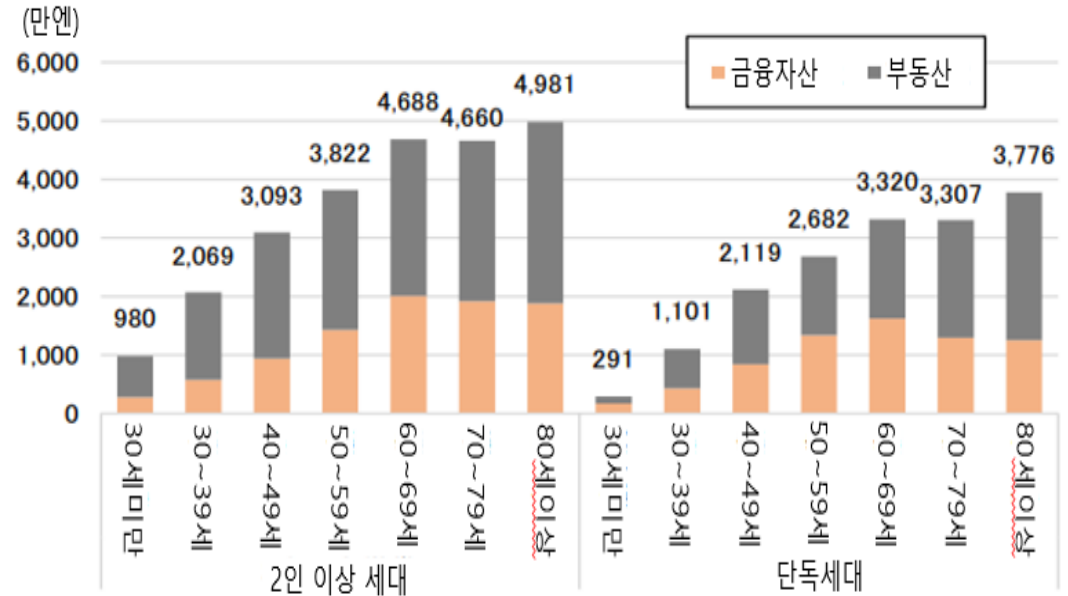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민건강보험공단, 서울대 건강금융센터 (2025.5)

# <참조> '치매머니' 규모(일본)

-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보유자산(금융자산, 부동산) 규모가 비례적으로 증가 → 80세이상 4,981만엔
- 치매 고령자의 보유자산 금액 (조원)
  - 2020년 254.8 조엔 → 2030년 317.6 조엔 → 2040년 348.7 조엔

가구주 연령별 보유자산 (단위: 만엔)



치매 고령자의 보유자산 금액 (단위: 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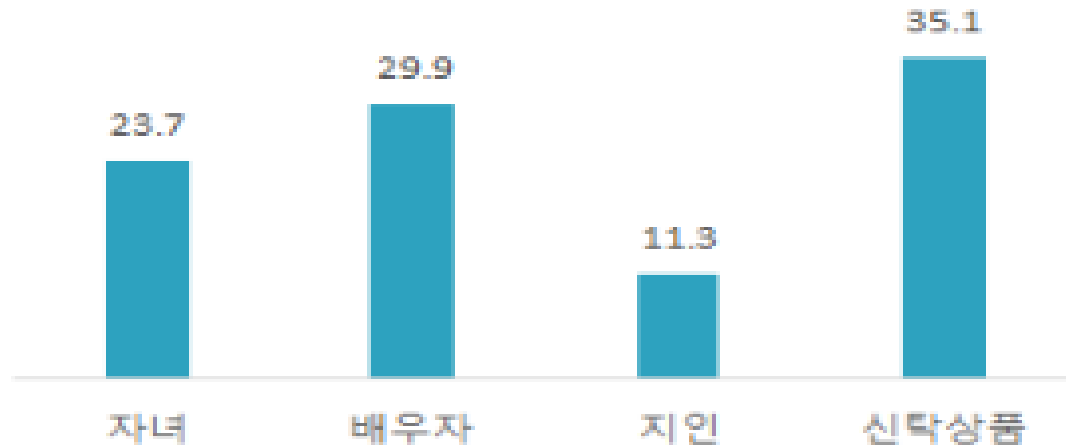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三井住友信託銀行(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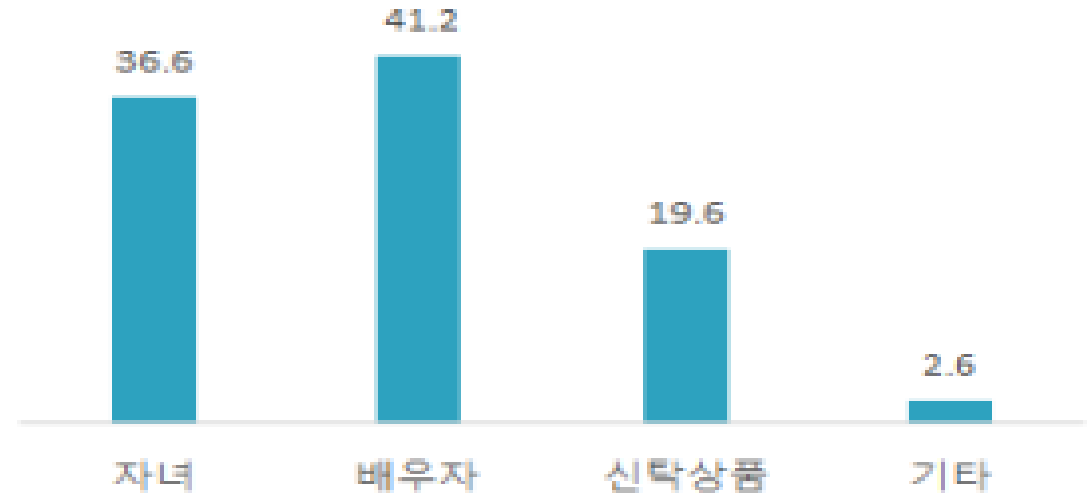
## 4. 치매 신탁 상품의 니즈 증대 : 가족 다음

- 치매로 인해 자신이 직접 자산관리를 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**대리 자산관리 계획 (N=318명)**
  - **신탁상품 35.1%** , 배우자 29.9% , 자녀 23.7% , 지인 11.3% 순
- 사후 자산 관리 계획 : 배우자 41.2% , 자녀 36.6% , **신탁상품 19.6%** , 기타 2.6% 순

대리자산 관리의 계획 (단위 :%)



사후 자산관리의 계획 (단위 :%)



자료 : 보험연구원(2024) 등에서 재인용

# 5. 치매 신택 활성화 정책 추진

- **정부 : 치매환자의 자산관리를 위한 치매신택 활성화 정책 추진**
  - 금융위원회(2020.8)의 치매신택(후견지원신택) 활성화 정책,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(2025.5)의 치매머니 관리지원대책, 보건복지부(2020.9)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등

## 정부의 치매신택 활성화 정책 (요약)

금융위  
(고령친화 금융환경조성방안)

- 치매환자 등 자산관리가 어려운 **고령자를 위해 치매신택(후견지원신택) 활성화**
  - 수탁재산범위 확대(채무, 담보권), 치매신택 전문특화신택사 도입여건 마련 등

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 
(치매머니, 관리지원대책)

- **치매 공공후견 확대, 민간 신택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, 공공신택제도 도입**
  -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택제도 개선안 마련 등

보건복지부  
(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)

- 치매환자 등 **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치매신택 개선**
  - 후견지원신택 공급여건 마련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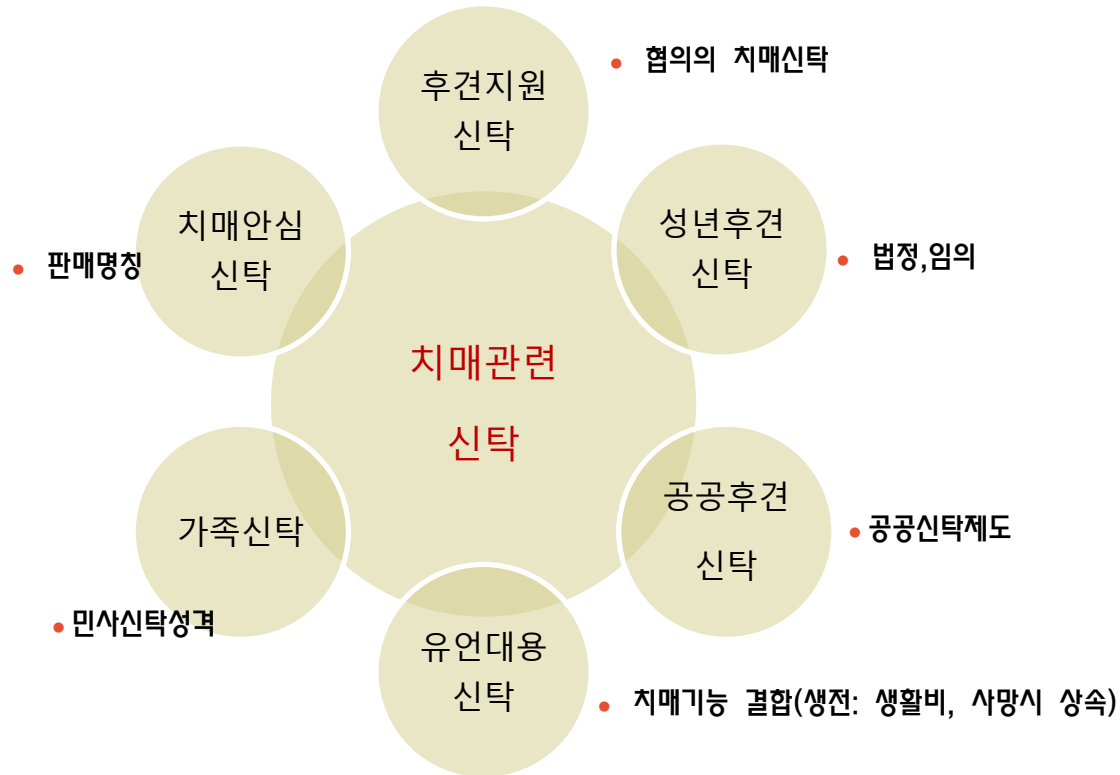
# <참조> 치매신탁(치매관련 신탁) 개념

• 치매신탁(치매관련 신탁) : 신탁계약상품에 치매형태를 결합하여 설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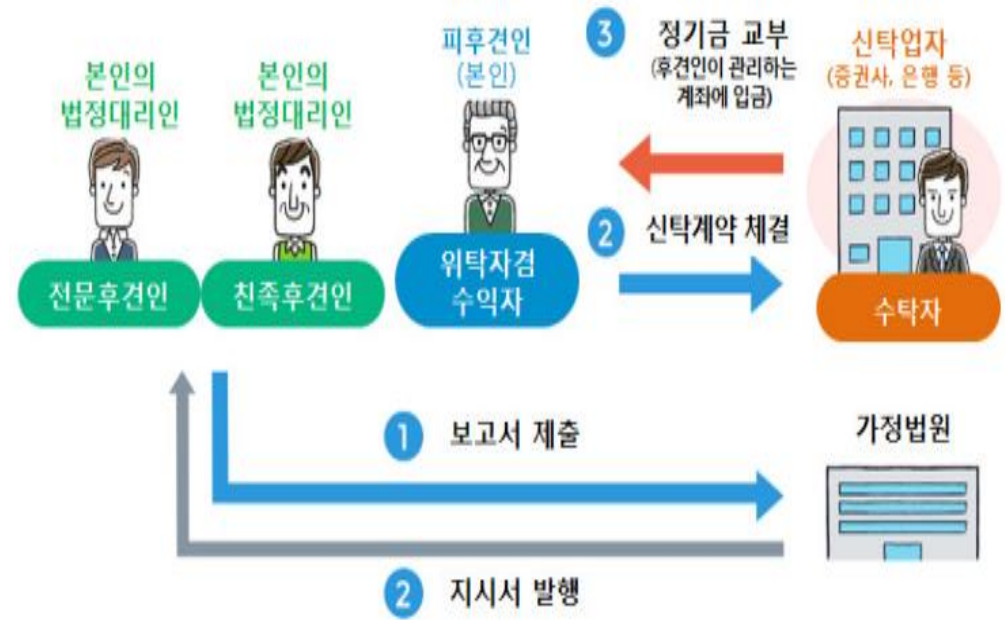
→ 고객의 자금을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다가 치매로 케어가 필요시 병원비, 간병비 등을 지급해주는 신탁

- 유언대용신탁으로서 치매신탁을 설계하거나, 후견지원신탁으로서 치매신탁을 설계하는 등 다양한 형태 설계가능

치매 관련 신탁 유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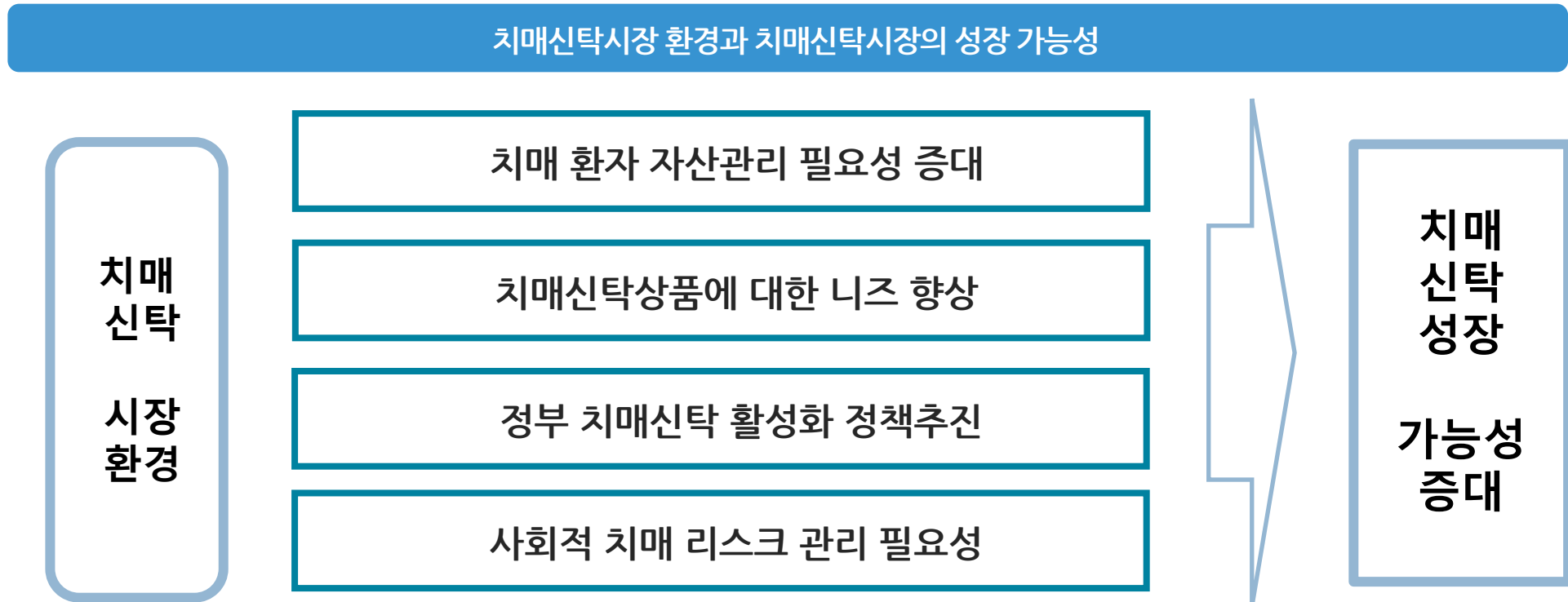
후견지원신탁구조



자료: 보건복지부,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(2020.9)

## 6. 치매신탁시장의 성장 가능성 증대

- 치매신탁시장 환경 감안 : **치매신탁의 중요성 증대 -> 치매신탁시장의 성장가능성 확대**
- (치매신탁시장 환경) 치매환자의 자산관리 필요성, 치매신탁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니즈 증대, 정부의 치매신탁활성화 정책 추진 등



# Ⅱ

## 치매신탁시장 현황 및 평가

---

1. 치매신탁시장 현황
2. 치매신탁관련 규제
3. 치매신탁시장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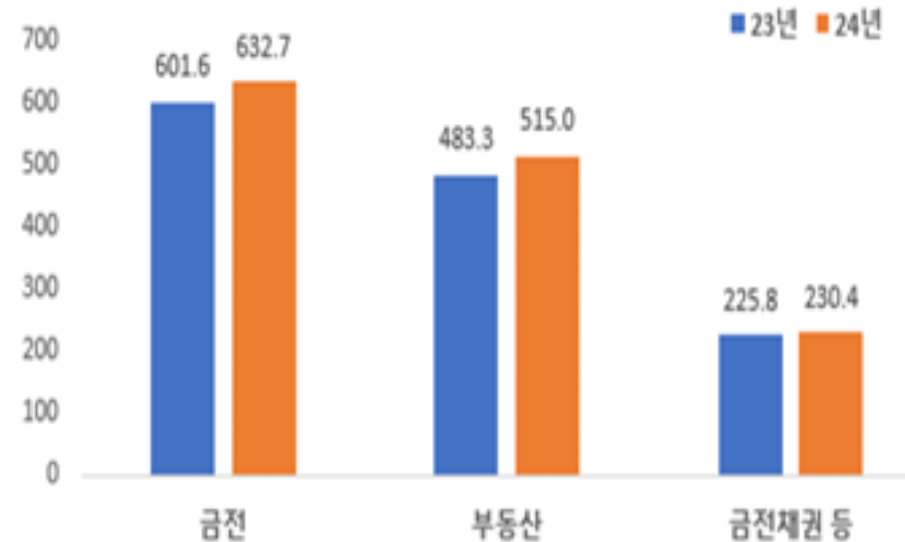
# 1. 신탁시장 현황(1/3) : 신탁재산별 수탁고기준

-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(2024년말)는 **1,378.1조원** (일본은 2023년 기준 1,700조엔)
- 금전신탁 632.8조원, 재산신탁 744.5조원, 종합재산신탁 0.8조원 순 (일본:금전신탁 32.0%, 재산신탁 8.9%, 포괄신탁 59.1%)
- (비중) 재산별로 **금전신탁 45.9%**, **부동산 37.4%**, **금전채권 16.0%** 순

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(단위 : 조원, %)

구분		'23년말 (A)	'24년말 (B)	증감 (B-A)	증감률
금전신탁	특정	587.2	619.3	32.1	5.5
	(퇴직연금)	289.5	327.7	38.2	13.2
	(수시입출금)	75.6	92.5	16.9	22.4
	(정기예금형)	68.9	71.6	2.6	3.8
	(채권형)	72.9	64.2	△8.7	△12.0
	(추가연계신탁)	31.6	13.0	△18.6	△58.9
	(기타)	48.7	50.3	1.6	3.1
불특정	14.4	13.5	△0.9	△6.1	
소계	601.6	632.8	31.2	5.2	
재산신탁	부동산	483.3	515.0	31.7	6.6
	(담보신탁)	358.2	387.2	29.0	8.1
	(토지신탁)	99.2	101.5	2.3	2.3
	(관리·처분신탁)	25.9	26.3	0.4	1.5
	금전채권	215.0	220.1	5.1	2.4
	유가증권 등	10.0	9.4	△0.6	△6.1
소계	708.3	744.5	36.2	5.1	
종합재산신탁	0.8	0.8	0.0	5.5	
합계	1,310.7	1,378.1	67.4	5.1	

신탁재산별 수탁고 현황 (단위 : 조원)



# 1. 신탁시장 현황(2/3) : 업권별 수탁고 기준

- 신탁시장에 진출한 보험회사(2024년 말 기준) **7개사**(생보 5개사, 손보 2개사) : **수탁고 비중은 2.0%**
- **보험회사 수탁고 27.9조원** (금전신탁 22.5조원, 재산신탁 5.4조원) : 종합재산신탁은 실적 없는 상황
- **(비중) 은행 47.0%, 부동산 신탁사 31.0%, 증권사 20.0% 순**

신탁시장 진출회사 현황

구분	개수	회사명	인가 단위				
			종합	금전	부동산		
검 영	은행	국내은행	16	신한, 우리, SC제일, KEB하나, 씨티, 국민, 대구, 부산, 광주, 경남, 산업, 기업, 농업, 수협, 전북	○		
		외은지점	2	도이치, 홍콩상하이		○	
	증권사		21	현대차, NH, SK, 교보, 대신, DB금융투자, 메리츠, 미래에셋, 삼성, 신영, 신한투자, 유안타, 유진투자, 하나, 한국투자, 한화투자, KB, IBK, 키움	○		
						○	
보험사		7	미래에셋생명, 삼성생명, 한화생명, 흥국생명	○			
					○		
전 업	부동산 신탁사	14	KB부동산, 교보자산, 대신자산, 대한토지, 무궁화, 신영부동산, 신한자산, 우리자산, 코람코자산, 코리아, 하나자산, 한국자산, 한국토지, 한국투자부동산			○	
계	60	-	38	8	14		

업권별 신탁 수탁고 현황 (단위 : 조원)

구분	금융회사(업권)			
	은행	증권사	보험사	부동산 신탁사
금전신탁	387.8	222.5	22.5	-
재산신탁	260.1	52.0	5.4	427.0
종합재산신탁	0.2	0.6	0.0	-
신탁전체	648.1	275.1	27.9	427.0
업권별 비중(%)	47.0	20.0	2.0	31.0

# 1. 신탁시장 현황(3/3) : 일본 사례

- 보험회사의 신탁업진출 : **신탁 대리점 영업방식 중심**(예: 보험금청구권신탁)으로 신탁시장 진출
  - **기타** : 신탁서비스제공방식, 스타트업의 신탁서비스시장 진출방식, 신탁자회사 및 신탁은행 출자방식 병행(치매신탁등)

신탁대리점 영업  
방식  
(보험금청구권신탁중심)

- 생명보험사들이 신탁은행의 **신탁대리점 자격으로 영업조직을 활용하여 신탁상품 판매**
  - 다이이치 생명과 미즈호 신탁은행, 메이지 야스다 생명과 리소나 은행, 소니생명과 미츠이 스미토모신탁은행, 푸르덴셜 생명과 푸르덴셜 신탁 등

신탁 서비스  
제공방식

- 가족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**생명보험사는 부대서비스로 가족신탁서비스 제공**
  - 칸포생명, SOMPO 히마와리 생명, 라쿠텐 생명, 도쿄해상니치도 안신생명 등
  - 가족신탁 컨설팅 회사인 패밀리라 (Famitr)와 제휴하는 방식

스타트업의  
신탁서비스시장  
진출방식

- 신탁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**핀테크 기업에 참여(주주등)하는 방식으로 진출**
  - 도쿄해상, AFLAC 생명 등

신탁자회사 및  
신탁은행 출자방식

- 푸르덴셜금융그룹이 관리형 **신탁회사 자회사를 두고 생명보험신탁 업무를 취급**
  - 일본생명, 메이지 야스다 생명 등은 신탁은행에 지분 투자방식으로 출자하여 상호협력함

# 1. <참조> 치매지원신탁(일본) : 지정 금전신탁중심으로 운용

- 치매지원신탁 : 지정금전신탁 중심 운영 (보험회사 : 신탁회사와의 업무제휴, 투자방식으로 진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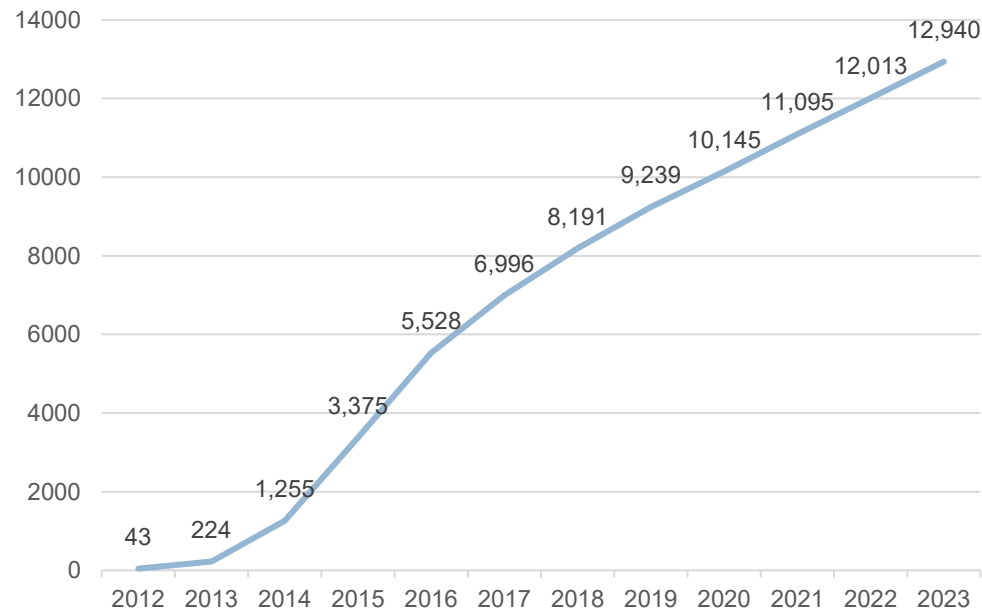
일본 치매지원신탁의 구조

대상	개인(국내 거주 고객) * 치매 진단 고객은 가입 불가(치매 회복 진단시는 신청가능)
위탁자 및 수익자	본인 (자익신탁)
신탁목적	신탁재산을 생활자금, 의료비, 간호비 등을 위해 운용하여 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함
신탁기간	신탁설정일로부터 신탁종료일까지(상속이 발생했을 때 등)
신탁운용	5년이상 (지정금전신탁으로 운용) * 신탁금은 운용방법이 동일한 다른 신탁금과 합동운용
신탁설정	500만엔 이상 1엔 단위 * 추가신탁가능 (5000엔이상 1엔 단위)
수속대리인	위탁자본인은 3촌이내친족, 변호사, 사법서사중에서 1명 지정 수속대리인은 위탁자본인의 치매진단서 제출 후 추가신탁가능 위탁자본인은 수속대리인의 상속발생, 후견개시 등에 대비해 차 순위의 수속대리인 지정가능
서비스제공	<지불체크서비스> 의료비, 간호비 등을 지급 * 1건당 10만엔 이상의 의료비, 간호비, 제금·사회보험료 대상 <지동이체서비스> 치매진단서 제출전에 신청 서비스 <정액추가서비스> 추가개시시기는 치매진단서 제출후
예정배당률	예정배당률은 지정금전신탁의 예정배당률을 적용 매년 3월과 9월 26일 및 신탁종료일에 수익을 원본에 추가
중도 해약	신탁기간 만료전의 중도해약은 불가
신탁업무의 위탁	신탁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가능(재신탁)
신탁보수	<신탁설정시> 신탁금액에 대해 1.1%, 상한 220만엔 <신탁기간중> 정액추가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액 3,300엔

# 1. <참조> 후견제도 지원신탁(일본) : 치매신탁시장의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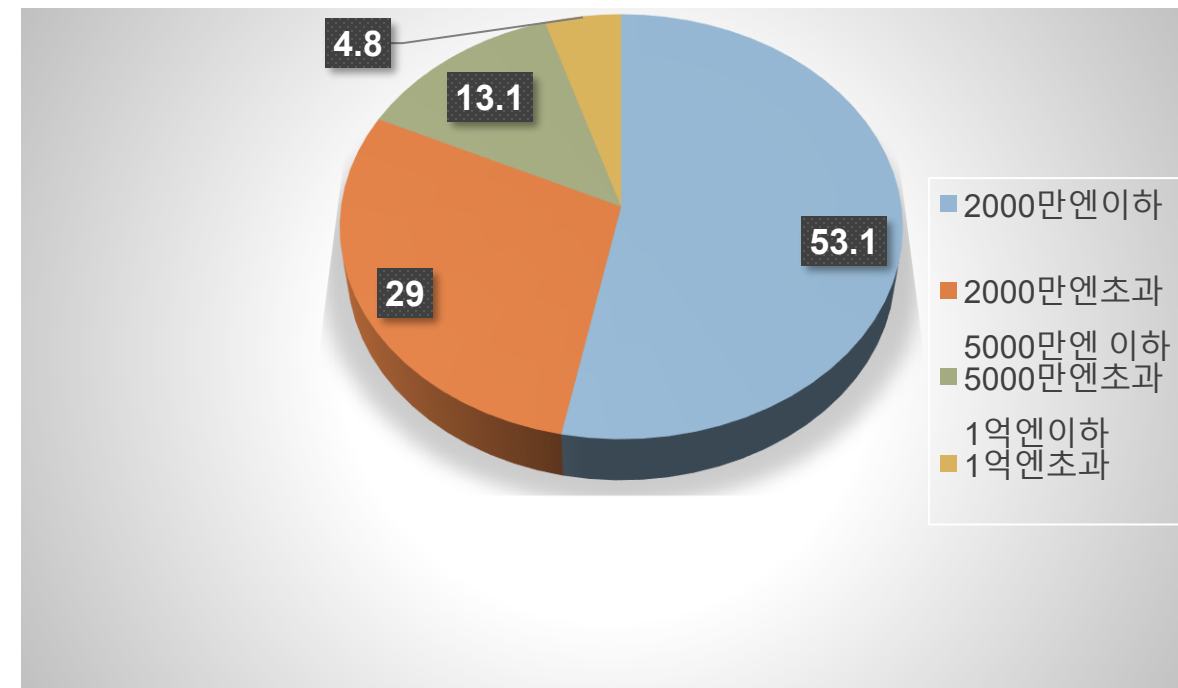
- 일본 후견제도 지원신탁(협의의 치매신탁)의 수탁고(2023년 기준): **약 1조 2,940억엔 (2012년 43억엔 불과)**
- 후견제도지원신탁 금액 비중 : **약 53%가 2000만엔 이하** ( 5억엔 초과 신탁 금액 비중도 17.9% 수준)

후견제도 지원신탁의 수탁고 (단위: 억엔)



자료: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(2025) 등에 의해 작성

후견제도 지원신탁 금액(재산)비중(%)



자료: 일본 최고재판소 사무총국 가정국 (2025) 등에 의해 작성

## 2. 신탁관련 규제(1/3) : 진입규제

- 보험회사의 신탁업 허용 → **법적 제약조건 없이 치매신탁 진출 가능**
  - 2003년 보험업법 개정 (겸영가능업무 인정) → 2005년 신탁업법 개정 (증권사와 함께 신탁업 영업가능)
- 신탁 진입 규제 : **종합신탁(250억)**, 금전신탁(130억), 재산신탁(120억), 부동산신탁(100억)

신탁업 인가 단위별 최저 자기 자본 요건 (단위 : 억원)

구분	세부 내용		
	신탁대상자산	고객(투자자)유형	최저자기자본(억원)
종합신탁	금전, 증권, 금융채권, 동산, 부동산, 부동산관련 권리, 무체재산권	일반 및 전문투자자	250
		전문투자자	125
금전신탁	금전	일반 및 전문투자자	130
		전문투자자	65
재산신탁	증권, 금전채권, 동산, 부동산, 부동산관련 권리, 무체재산권	일반 및 전문투자자	120
		전문투자자	60
부동산신탁	동산, 부동산, 부동산관련권리	일반 및 전문투자자	100
		전문투자자	50

## 2. 신탁관련 규제(2/3) : 업무규제

- 신탁재산의 범위 : 신탁가능재산을 **열거식으로 규정 (열거주의)**
  - 일본 : 2004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열거식 규정 폐지 (포괄주의 지향)
- 신탁업무의 위탁 (재신탁불가능)금지 → **종합재산신탁 활성화 미흡**

### 신탁재산 및 신탁업 업무 범위 규제

#### 신탁재산의 범위

- 신탁재산을 금전, 증권, 금전채권, 동산, 부동산 등으로 열거해야 인정 (**열거주의**)
  - (일본) 재산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재산으로 신탁행위에서 정하면 신탁재산에 포함(**포괄주의**)

#### 신탁업무의 위탁

- 신탁인수 등을 신탁업자의 본질적 업무로 보아 **업무위탁(재신탁) 불가능**
  - (일본) 신탁행위에서 명시하는 경우 **재신탁 가능**( 재신탁을 법제에서 허용)

#### 신탁업 업무범위

- **관리형 신탁업 및 신탁계약 대리점** 등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(**미허용**)
  - (일본) 신탁업자경제적 행위를 관리와 운용으로 **명시**, 신탁계약대리점의 **신탁상품판매허용**

## 2. 신탁관련 규제(3/3) : 업무규제 (종합재산신탁 중심)

### • 종합재산 신탁 **활성화 필요성**

-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자 대상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산신탁 활성화 필요

\* (자본시장법 제 103조제2항) : 신탁업자는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로 부터 위탁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재산 중 둘 이상의 재산을 종합하여 수탁할 수 있다(일본의 포괄신탁과 유사)

### • 종합재산 신탁 관련 **현행 규제**

- 현행 **재신탁이 불가능**하고 **금전비율에 따라 공동운용제한**이 있어 전체 수탁고 중 종합재산신탁 활용 미흡

#### 재신탁 관련 규정

• 신탁법(제3조제5항)에 따라 재신탁이 허용되어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재신탁 관련 규정의 불비로 인하여 **실질적으로 재신탁 불가**

\* 재신탁기능범위 및 재산, 재산명의처리 등 실제업무처리를 위한 사항

- 종합재산신탁시 **신탁회사가 다양한 금전, 재산신탁을 모두 직접 운용**해야 하는 문제 대두

#### 공동운용 제한

• 자본시장법에 따라 종합재산신탁 중 **금전 수탁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신탁만** 금전의 공동운용가능 (일반적으로 금전의 공동운용은 집합투자에 해당)

- 일반적으로 예금비율이 높은 고령자 자산구조상 **종합재산신탁의 공동운용불가**

### 3. 치매신탁시장 평가 : 진입 단계

#### 치매신탁시장 평가

##### 치매 신탁규모

- 60개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는 1,378조원 : 보험사 수탁고는 27.9조원에 불과
  - 보험사 : 금전신탁 22.5조원, 재산신탁 5.4조원
  - 보험사 : 퇴직연금 중심 금전신탁이 대부분 → **명시적 치매신탁 상품 취급 부재**

##### 치매 신탁규제

- 보험회사, 치매신탁시장 **진출의 별도 장애요인(법적)은 없는 것으로 평가**
  - 그럼에도 신탁업무의 위탁(재산신탁) 금지 등으로 **진출의 제약조건 존재**
  - 일본 : 재산신탁 허용, (신탁대리점 영업방식), 치매신탁 전문 특화 신탁회사 허용 등

##### 치매 신탁상품

- 하나은행 등 **은행중심 금전신탁 형태로 운영** → **예적금 성격 수준**
  - 치매머니(154조)를 활성화할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절실
  - 2020년 치매대책이후 후속입법, 제도 도입 등이 미흡 → **치매신탁상품 다양성 부족**



# 보험회사의 역할 및 과제

---

1. 역할
2. 과제 : 경영전략적 과제, 법적 제도적 과제

### 치매교육 및 신탁서비스의 제공자 역할

- 치매신탁관련서비스 소개
- 치매신탁관련서비스 지원 등

### 치매 리스크의 관리자 (리스크전가) 역할

- 개인 및 사회적 치매리스크 감소 기능
- 경도인지 장애자 보호 기능 제고



### 치매환자의 종합자산관리자 역할

- 치매환자의 종합 자산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제고

### 정부 치매정책의 보완역할

-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연계성 강화
- 치매보험과 치매신탁의 역할제고

# 1. 역할(1/4) : 치매 신탁 서비스 지원 및 제공

- **(치매 서포터 역할)** 보험설계사, 임직원 등 대상 치매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치매 서포터 역할
  - 기존의 가정, 국가에 의존한 치매환자 케어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치매커뮤니티 등을 조성하는데에 역할강화
- **(치매신탁서비스 제공 역할)** 치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후견제도, 치매신탁 등 제도 활용 지원 서비스 제공

## 치매교육, 신탁서비스의 지원 및 제공

### 치매 서포터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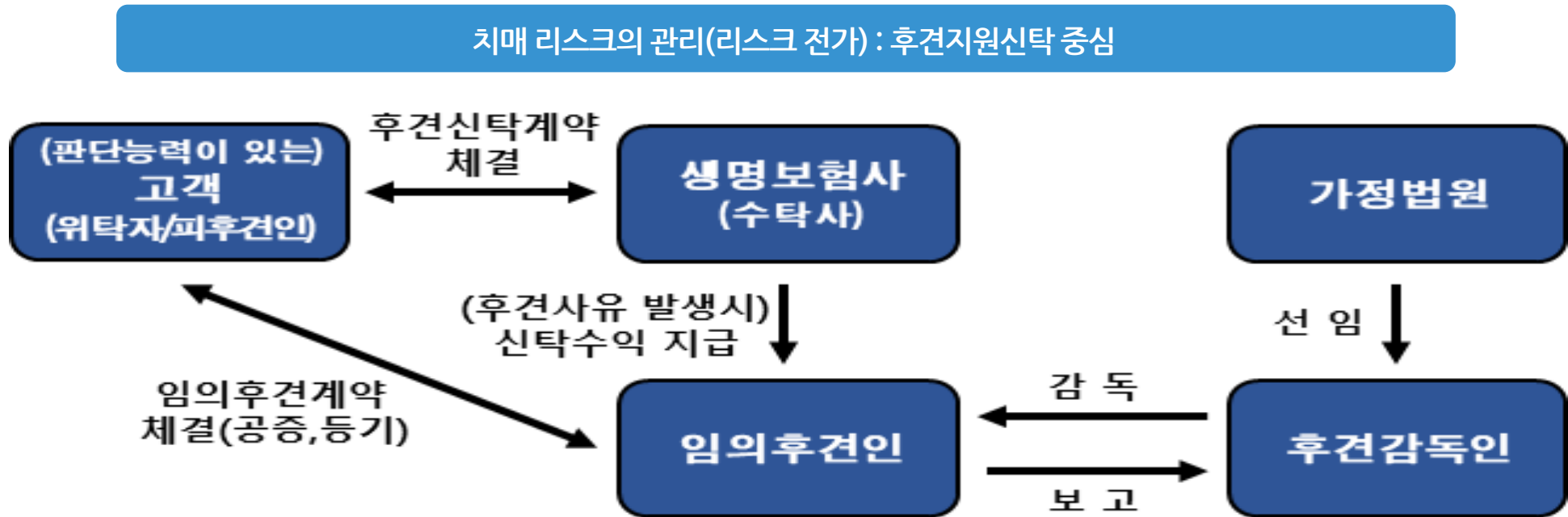
- 보험설계사, 임직원 등 대상 **치매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치매 서포터 역할**
  - 기존의 가정, 국가시설에 의존한 치매 환자 케어가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**치매 커뮤니티** 등을 조성하는데 **보험회사의 역할 강화**

### 치매신탁서비스 지원·제공 역할

- 치매시 금융자산 및 부동산 거래가 어려운 자산 동결이 발생, 환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**신탁제도 활용 및 지원 서비스 제공 (보험계약자대상) 역할**
  - 성년후견제도, 후견제도지원신탁, 가족신탁제도 등 상담/중개서비스 제공 역할

# 1. 역할(2/4) : 치매 리스크의 관리 (리스크 전가)

- 보험회사는 치매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 제고를 위해 **경증 치매신탁시장 진출에 보다 관심**을 가질 필요
  - 잠재적 치매환자라 할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대상으로 (경증)치매신탁 상품 개발 및 시장 진출 검토
- 경도인지장애자(약 298만명) 대상 치매신탁시장 진출 → **치매 리스크의 전가 역할**



자료: 생명보험협회 (2025) 등에 기초 작성

# 1. 역할(3/4) : 치매 정책의 보완 (공사협력)

- 국가주도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보험에 **치매신탁 연계성 제고** → **공사협력 강화**
- 치매정책(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치매보장)의 보완적 기능 제고 : **경증에서 중증시까지** 치매요양 대책 마련
- **(치매와 보험역할)** 치매예방(헬스케어) → 치매신탁(경증) → 치매보험(중증) → 치매요양소요자금(신탁잔금 활용)

치매정책의 보완기능 제고 (공사협력)

구분	사회보험	민영보험 및 신탁
1등급 (전신 전기능 저하)	노인장기요양보험	치매보험 (주로 중증기 치매에 치중)
2등급 (심한 기능 저하)		
3등급 (중증도 기능 저하)		
4등급 (경도 기능 저하)		
5등급 (치매)		치매신탁 (주로 경증기 치매부터)
인지지원등급(치매)		

자료: 정봉은·이선주(2017), 보험연구원 등을 참조 작성

# 1. 역할(4/4) : 치매 환자의 자산관리 지원 : 종합재산신탁 활용

- **(대상)** 고연령 치매환자 중심의 자산관리 프로그램 제공 → 자산동결의 경제적 영향 감소
  - 장기적 : 보험회사, 치매환자 자산 관리자로서의 역할 (자산동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 역할)
- **(방법)** 종합재산신탁 중심의 자산관리 → (예) 유언대용 신탁에 치매 설계 (유언대용신탁 + 치매내용) 등

## 치매신탁 시장 및 상품 개발 측면

### 자산관리 대상

- **(대상)** 고연령 치매환자 중심의 자산관리 → 자산동결에 따른 경제적 비용 감소역할
  -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의 자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

### 자산관리 방법

- **(방법)** 종합재산신탁 중심의 자산관리 → 치매머니 활성화(치매머니 관리)
  - 예: 유언 대용 신탁 등을 통해 치매신탁을 설계하는 방안 등

### 단계별 치매신탁시장 진출 전략 수립

- (진출대상) 보험계약자 → 일반인 중심
- (신탁상품) 금전신탁 → 종합재산 신탁

경영  
전략적  
(1/3)

### 치매신탁 규제 제도적 개선

- 종합재산신탁 내실화 관련
- 치매신탁시장 활성화 관련

법적  
제도적  
(3/3)

경영  
전략적  
(2/3)

### 치매신탁 영업 및 운영 전략 모색

- 신탁 전문지식을 함유한 설계사 양성
- 본체 또는 타금융권과의 업무제휴 모색 등

## 2. 과제(1/3) : 경영전략적 측면

- 보험회사, **비보험사업 부문(치매신탁) 진출을 위한 단계별(1단계,2단계) 경영 전략 수립 필요**
  - 진출 대상 : **보험계약자 대상** 치매신탁시장 진출 전략(1단계) → **일반인 대상** 치매신탁시장 진출(2단계)
  - 신탁상품 : **치매리스크관리자** 역할 차원 신탁상품개발(1단계) → **종합재산관리자** 역할 차원 신탁상품개발(2단계)

### 치매신탁 시장 및 상품 개발 측면

#### 치매 신탁 시장

- (단기) **보험계약자 대상 중심**의 치매신탁 시장 진출 전략 모색
  - 보험가입자 치매교육 및 치매신탁 서비스 제공(1단계)
  - 치매보험 등 보험가입자 중심 치매신탁시장 진출 (2단계)

#### 치매 신탁 상품

- **단계별(1단계, 2단계)에 따른 치매 신탁상품** 개발 방향 모색
  - 치매 리스크관리자로서의 역할 차원, 금전신탁중심 상품개발 (1단계)
  - 치매 환자 자산관리자로서의 역할 차원, 종합재산신탁 상품개발 모색 (2단계)

## 2. 과제(2/3) : 경영전략적 측면

- **(치매신탁 영업)** 치매신탁 마케팅을 위한 수수료 체계, 신탁전문지식을 함유한 보험설계사 양성 필요  
- 투자권유대행 자격 취득 등 치매신탁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대책 검토
- **(치매신탁 운영)** 보험회사 본체 중심의 치매신탁 운영 → 시너지 차원에서 타금융권과의 업무제휴 모색

### 치매신탁 영업 및 사업 측면

#### 치매신탁 영업

- (수수료 체계) 치매신탁 마케팅을 위한 적절한 **수수료 체계** 모색
- (설계사 양성) 치매신탁은 관리형 신탁상품이지만 불완전판매방지 등을 위해 **신탁상품 관련 전문지식 설계사(투자권유대행인 자격 취득 등)** 양성 필요

#### 치매신탁 사업

- **보험회사** 본체 중심의 치매 신탁사업 운영, 또는 **타금융권과의 업무제휴** 등 치매신탁시장의 진출 방안 모색 필요  
- 은행, 증권, 부동산 신탁사 등과의 업무제휴 등 모색

## 2. 과제(3/3) : 법적제도적 측면

- (치매신탁 안내, 종합재산 신탁 내실화) 치매신탁제도 안내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. 재신탁 관련 규정 마련 등
- (치매신탁시장 활성화)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제도 보완 (후견제도지원신탁 확대), 소극자산 수탁허용 등

### 치매신탁 관련 법적 제도적 과제

#### 치매신탁 규제

- **보험설계사, 치매신탁 제도 안내 관련**
  - 보험설계사 등이 후견신탁, 임의 후견제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법령개정 및 제도마련
- **종합재산 신탁 내실화 관련( 한국 종합재산신탁 비중 0.06% vs 일본 포괄신탁 59.1%)**
  - 자본시장법상 재신탁관련 규정마련, 공동운용을 허용하는 금전비율 기준 완화
- 신탁가능 재산의 범위 : 열거주의 방식에서 **‘포괄주의’** 방식 모색
- **치매신탁시장의 활성화 관련**
  -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제도의 개선(후견제도지원신탁 확대 등)
  - **소극재산(채무, 세금)** 수탁허용 등 → 신탁을 활용한 생애주기 맞춤형 자산관리 활성화 차원

IV

맺음말

---

## 맺음말

보험회사, 치매의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**치매정책의 보완적 기능 강화**

보험회사, 치매신탁시장을 **또 하나의 신 성장영역으로 재인식 필요**

보험회사, 치매보험, 치매신탁을 연계해 **치매 리스크관리자의 역할 중요**

보험회사, 이제 **비보험 부문 사업 진출** 등으로 보험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필요

**감사합니다**